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송도호 의원 외 22명

나. 의안번호 : 제2990호

다. 제출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사유

-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택시 차령제도는 차량의 상태나 실제 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 연한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도 차령 만료만으로 조기 폐차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자원 낭비는 물론, 경영 여건이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

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의 기본차량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관련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임

- 이에 서울수도 평균주행거리 등 차량 운행 실태를 반영하여, 택시 기본차량의 연장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량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안제11조제1항 신설)
- 나. 기본차량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안제11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2023.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서울 법인택시의 평균 주행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잦은 정체와 빈번한 신호 대기 등으로 주행 여건이 열악하기에 차량 안전 및 승차감 저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장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6년 기준, 서울 법인택시 주행거리 56만km으로 가장 높음(전국 평균 43만km)

▶ 국토부 「여객법」 택시차령제도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료 기준('22.10월)

- 법인택시 운행거리(6년, 만km) : 서울56 > 경기52 > 인천40 > 충남38 > 강원33
-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 택시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안내

- 예를 들면 법인택시 중 6년 주행거리 20만km 미만 차량이 차령기준에 따라 폐차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차량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이 필요한 상황임

※ 사례 : M사 '25.6월 차령이 만료된 차량 5대의 6년 평균 주행거리는 196,662km 불과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2년까지 기본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방침 등을 통해 세부적인 연장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1) 택시정책과-30538호('25.8.21.)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현황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등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 차령연장²⁾, 차령 만료후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 연장³⁾ 등 3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8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택시) 차령연장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의 중형⁴⁾ 일반(법인)택시의 경우 기본차령 4년, 차령연장 2년(1년 단위로 2회), 차령만료후 추가연장 6개월로 최대 6년 6개월 동안 차량을 운영할 수 있고, 동종의 개인택시는 최대 9년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 기본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3년 6개월 4년 6년 6년

○ 한편 전체 서울시 택시(64,701대⁵⁾) 중 배기량 2,400cc 미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5) 서울시 택시 등록대수 구성비율

(市 자료, 단위: 대, %)

구분	계	배기량 2400cc미만	배기량 2400cc이상	친환경차량등	승합
일반택시	15,638	13,987	354	624	673
개인택시	49,063	39,713	2,327	6,922	101
합계	64,701	53,700	2,681	7,546	774
(비율)	(100.0)	(83.0)	(4.1)	(11.7)	(1.2)

만 택시 비율은 83.0% (53,700대)로 가장 높고 이중 일반 택시의 등록대수 현황⁶⁾을 살펴보면 약 56.6%(12,785대)가 등록된지 4년 이내(2021년 이후 등록)로 나타남

■ 기본차령 연장의 필요성 관련

- '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⁷⁾되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기본차령 연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6) 서울시 법인택시 등록현황

(市 자료, 단위 : 대, %)

구 분		계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휴업및 말소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일 반 택 시	중형	20,869	2,863	3,371	2,443	1,528	1,568	2,602	201	31	4	-	6,258
	고급	460	97	27	151	72	-	5	1	-	-	1	106
	대형	1,236	68	88	128	163	221	4	1	-	-	-	563
	승합	2	-	-	-	-	-	-	-	-	-	-	2
	계	22,567	3,028	3,486	2,722	1,763	1,789	2,611	203	31	4	1	6,929
	(비율)	(100)	13.4	15.4	12.1	7.8	7.9	11.6	0.9	0.1	0.01	0.01	30.7

※ 개인택시 차량 연식별 자료 없음

※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 승용), 고급(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 대형(배기량이 2,000cc 이상 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여객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일부개정·시행)

○ 별표2 제1호 비고 나. 개정

-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서울시 일반택시운송사업(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해 2019년 이후 운수종사자 수가 급감(약 33.2%)하였고, 이에 따른 법인택시 가동율 저하 및 영업건수 감소로 인하여 휴업 및 말소 차량이 30.7%에 이르고 있음

※ 운수종사자 현황

(市 자료,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총 계	79,655	73,616	69,959	69,697	69,520	69,432	69,462
법인택시	30,527	24,507	20,888	20,599	20,430	20,358	20,396
개인택시	49,128	49,109	49,071	49,098	49,090	49,074	49,066

※ 연도별 법인택시 가동율

(市 자료, 단위 : %)

연 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가동율	50.35	40.70	34.12	32.46	33.64	34.17	34.67

※ 연도별 택시 영업건수

(市 자료, 단위 : 천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연 영업건수 (천건)	(계)	375,617	286,057	274,043	284,020	270,392	270,145	155,655
	개인	213,431	164,038	169,978	185,565	179,839	180,150	103,333
	법인	162,185	122,019	104,064	98,455	90,553	89,995	52,322

※ 택시 등록 및 휴업 현황

(‘25년 7월말 기준 市 자료,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법인택시
면허대수	71,630	49,063	22,567
등록대수	64,436	48,798	15,638
휴업 및 말소 대수	7,194	265	6,929

주: 개인택시(휴업 265대), 법인택시(휴업 5,672대, 말소 1,257대)

- 동 개정조례안은 법인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세부사항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시장이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중형 법인택시의 차령은 6년 6개월에서 최대 8년 6개월로 증가될 수 있어 법인택시업계의 차량운용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됨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반택시 차령 변화

<현 행>				↓<차령만료>			
기본차령 (3.5~6년)	+	차령연장 (최대 2년)	+	차령 초과운행 (출고지연 등 최대 6개월)	=	총 운행기간 (6~8.5년)	
<개정안>				↓<차령만료>			
기본차령 (3.5~6년)	+ <u>최대 2년</u>	+	차령연장 (최대 2년)	+	차령 초과운행 (출고지연 등 최대 6개월)	=	총 운행기간 (8~10.5년)

■ 차령연장에 대한 고려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경직적 차량 운행 제한 문제점,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주행거리가 짧음에도 사용연한에 도달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택시 차령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⁸⁾한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0.31)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을 도모함으로써 법인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자동차 자원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차령제도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평균운행거리는 6년 기준 56만km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⁹⁾ 일부 회사의 경우 가동률 부족으로 6년 주행거리가 20만km에 불과함에도 대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 개정은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택시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는 법령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의 차령을 연장할 경우 운수종사자 및 택시 이용자의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 바 법령 개정 취지와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정도, 차량 운행안전, 자동차검사 합격여부 및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차령을 연장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법인택시 운행거리(6년, 만km) : 서울56 > 경기52 > 인천40 > 충남38 > 강원33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구 분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관 련 조 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의3(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개정 시 기	'24. 1. 3. 본조신설	'24. 3. 18. 본조신설	'23. 12. 22. 본조신설
비 고	신청시 정기검사 합격통지서 첨부	-	-